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913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31.

발의자 : 주호영 · 이종구 · 정양석

김현아 · 김세연 · 황주홍

이학재 · 이완영 · 정병국

김영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의 신설·확장·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,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리가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%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.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,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

위 함임(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).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,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